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01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제2202501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4
가. 불법하도급에 따른 결격사유 및 등록말소 강화 등(안 제12조 등)	4
나. 건설인력 관련 제출정보 구체화(안 제24조 등)	14
다.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 관련 주의·관리 의무 강화 등(안 제29조 등)	18
라.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 제도 도입(안 제84조)	24
마. 불법하도급 행위 등에 관한 벌칙 강화(안 제95조의2 등)	27

I.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제2202501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태영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8. 1.

다. 회 부 일 : 2024. 8. 2.

2. 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받지 않도록 발주자, 수급인과 도급인, 하도급인 간 법률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벌대상을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 및 인허가권자까지 확대함(안 제29조제7항 및 제38조제4항 등).

나.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29조의2제1항).

다.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제29조의3제1항).

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안 제82조, 제83조, 제95조의2 및 제97조 등).

마.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8조, 제49조의2, 제82조 및 제83조).

4. 검토의견

가. 불법하도급에 따른 결격사유 및 등록말소 강화 등(안 제12조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3. -----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 · 제3호의3 · 제8호 · 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 제3호의3 · 제7호 · 제7호의2 · ----- ----- · 제10호의2 및 ----- ----- -----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라.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 · 제3호의3· 제4호· <u>제5호</u>· 제8호· 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6. (생략) ②· ③ (생략)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 및 제87조의3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u>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u> <u><신설></u> <u><신설></u> 2. ~ 6. (생략)	라. ----- -----<u>제5호</u>· <u>제7호</u> · <u>제7호의2</u>· -----· <u>제10호의2</u> 및----- ----- ----- 4. ~ 6.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 ----- ----- ----- ----- ----- ----- ----- ----- -----. 1. <u>제82조제1항제3호의2</u>----- ----- <u>1의2.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u> <u>1의3. 제82조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u> 2. ~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8. ~ 10. (생략) <u><신설></u> 11. ~ 13. (생략)	7의2.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2제1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고(제10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로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8.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2제1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중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로 감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 13. (현행과 같음)

안 제83조는 현행법에서 의무적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유를 현행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불법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서, 현행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부터 제5항까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불법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확대하려는 것임.

< 불법하도급 금지 위반에 따른 건설업 등록 말소 대상 확대(안) >

현 행		개 정 안
일괄 하도급 시		일괄 하도급 시(제29조제1항)
전문공사 하도급 시		전문공사 하도급 시(제29조제2항)
불법 재하도급 시	⇒	불법 재하도급 시(제29조제3항)
		(추가)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시 (제25조제2항)
		(추가) 10억원 미만 공사 하도급 시(제29조제4항)
		(추가) 종합공사를 하도급한 전문업자(제29조제5항)
		(추가)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하수급인(제29조제7항)
		(추가) 하수급인 관리를 위반한 자(제29조의2제1항)

또한, 개정안에 따라 확대된 불법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할 시 사고 경중에 따른 위반 회수 등을 고려하여 ①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2회 이상 다시 위반한 경우 ②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5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③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중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등으로 구분하여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불법하도급 금지 위반 사유별 건설업 등록 말소 대상(안) >

건설업 등록 말소 대상	주요내용
① 하도급제한 5년 내 3회 위반 (안 제83조제7호) * 3-strike out	·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2제1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u>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u>
② 하도급제한을 위반하여 부실 시공으로 사망사고가 5년 이내 2회 발생한 경우(안 제83조제7호의2) * 2-strike out	·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2제1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고(제10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u>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u>
③ 하도급제한을 위반하여 구조상 주요부분이 붕괴되어 5인 이상 사망한 경우(안 제83조제10호의2) * 1-strike out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2제1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u>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u>

아울러, 안 제13조는 안 제83조에 따라 확대된 건설업 등록 말소 규정을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반영하여 불법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과 관련한 건설업 등록 말소 규정과 결격사유 규정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최근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및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인천 검단 LH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¹⁾ 등 불법 하도급 또는 설계와 다르게

1) ○ **철거건물 붕괴사고**: 2021년 6.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학동4구역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학산빌딩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총 11명 사상(사망 3명, 부상 8명)
⇒ 주요원인: 사고조사위원회는 당초 3.3m²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84% 삭감된 3.3m²당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된 것이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

○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2022. 1. 11.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어 근로자 7명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
*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

시공되는 설계·감리 부실 등으로 인해 대형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부실 건설현장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대형 건설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불법 하도급임을 고려하여, 불법 하도급에 대한 건설업 등록 말소 및 결격 사유의 요건을 강화하여 건설시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1,047건으로 나타났고 현행법에 따른 처분 대상인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 외에도,

저가 하도급을 통한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 있어 개정안에서 확대하고 있는 제25조제2항, 제29조제4항·제5항·제7항 및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도 759건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원인: 사고조사위원회는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콘크리트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

○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2023. 4. 29. 인천 검단신도시 내 LH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판(슬래브)이 붕괴되는 사고 발생(인명 피해 無)

⇒ 주요원인: 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

이와 같이 불법하도급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발생 시 그 인적·물적 피해가 대규모화 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 확대하고 있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불법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할 시 사고 경중에 따른 위반 회수 등을 고려하여 등록말소 조건에 차등을 두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고 경중 등을 기준으로 등록 말소 조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례²⁾가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불법 하도급 금지 대상 확대 및 행정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건설사업자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건설공사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의2.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营业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제7호·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13.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0.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 2019년도 ~ 2024년도(7월) 하도급 금지 위반에 따른 처분 건수 >

(단위 : 건)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계		1,047	117	174	177	221	232	126
영수증 발급	소계	310	28	53	61	77	50	41
	일괄하도급 (제29조제1항)	22	3	7	5	3	1	3
	동일업종간 하도급 (舊)제29조제2항)	10	1	2	5	1	1	-
	전문공사 하도급 (제29조제2항)	10	-	-	-	4	5	1
	재하도급 (제29조제3항)	20	2	5	3	4	6	-
	소규모 하도급 (제29조제4항)	2	-	-	-	-	2	-
	전문업자 도급 종합공사 하도급 (제29조제5항)	-	-	-	-	-	-	-
	무등록 (재)하도급 (제25조제2항)	246	22	39	48	65	35	37
과징금	소계	737	89	121	116	144	182	85
	일괄하도급 (제29조제1항)	57	18	17	7	9	2	4
	동일업종간 하도급 (舊)제29조제2항)	23	7	8	3	3	2	-
	전문공사 하도급 (제29조제2항)	106	-	-	5	46	42	13
	재하도급 (제29조제3항)	44	7	4	11	7	10	5
	소규모 하도급 (제29조제4항)	17	-	-	-	3	14	-
	전문업자 도급 종합공사 하도급 (제29조제5항)	2	-	-	-	-	2	-
	무등록 (재)하도급 (제25조제2항)	488	57	92	90	76	110	63

* 자료: 국토교통부

* 동일업종간 하도급(舊)제29조제2항)은 22년 폐지

< 2019년도 ~ 2024년도(7월) 관리의무 미이행(제29조의2제1항) 처분 건수 >

(단위 : 건)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계	4	2	-	-	2	-	-
과태료	2	2	-	-	-	-	-
영업정지	1	-	-	-	1	-	-
과징금	1	-	-	-	1	-	-

*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개정안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사고에 대한 처벌 대상 및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으나, 등록 말소 요건 강화로 인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배상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건설인력 관련 제출정보 구체화(안 제24조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 ③ (생략)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공급업자, 관계 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관련 공제·보험·보증 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 ----- ----- ----- -----다음 각 호의----- -----. ----- --.
<신설>	1. 공사 수행 상황
<신설>	2. 건설자재의 생산·판매 상황
<신설>	3.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현장에 고용된 건설근로자 등 건설인력 현황(국적·성명·생년월일·성별을 포함한다)
<신설>	4. 건설사업관리 실적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자료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제49조의2(자료요청) ----- -- 제4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현행	개정안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u>기술능력</u>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u>자료</u>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u>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u>----- -----<u>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u>----- ----- -----<u>자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를</u>----- ----- ----- -----. 1. 제10조제1호에 따른 <u>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u> 2. <u>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u> 3. <u>해당 공사에 고용된 건설근로자</u>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①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자 등에게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현장에 고용된 건설근로자 등의 건설인력 현황(국적·성명·생년월일·성별을 포함한다)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 또는 해당공사에 고용된 건설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먼저, 개정안 전체의 발의 목적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으로 부실시공을 야기하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건설공사에서의 주체별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와 같은 개정안의 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수단이 필요한 바, 건설기술인 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는 건설사업자는 시공능력 부족으로 불법하도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안 제24조 및 제49조의2와 같이 현재 건설공사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를 통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능력이 없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불법하도급 여부 판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현장에 고용된 건설 근로자 등 건설인력 현황(국적·성명·생년월일·성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고유식별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설인력 투입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국토교통부도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이 부적합하거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의 채용정보를 정확히 알고, 필요 시 처벌할 수 있도록 4대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고유식별정보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다.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 관련 주의·관리 의무 강화 등(안 제29조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 ⑤ (생략)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하려는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까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하도급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1. 2. (현행과 같음) ⑦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각의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도급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

현행	개정안
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u>제29조 제3항</u>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② (생략)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u>제2항</u>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u>건설공사</u>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u><신설></u>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 ③ (생략) <u><신설></u>	-----<u>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건설기술인(건설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고용, 자재 또는 장비의 구입·임대를 직접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29조제3항</u>----- -----. 이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관리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수급인으로부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2항</u>----- -----<u>하도급계약</u>----- -----.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u>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u>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u>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u>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자는 수급인·하수급인에게 <u>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u>에 위반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거나 수급인·하수급

현행	개정안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u>인과 이를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 ----- ----- ----- ----- -----.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하도급을 받은 자가 제29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하도급을 한 자가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받은 자에게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았거나 위반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u>
4. <u>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u> <u><신설></u>	4. <u>제29조제6항 본문에 따른 발주자에게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u> <u>4의2.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u>
5. ~ 11.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5. ~ 11. (현행과 같음) ② ----- ----- -----

현행	개정안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7. (생략) ③ (생략)	----- ----- ----- ----- ----- ----- --40----- ----- -----. 1.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안 제29조제6항은 건설공사 하도급 시 하도급을 하려는 자에게 현행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하도급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하도급을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안 제29조제7항은 하도급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현행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는 결국 건설공사 하도급 시 하도급을 하려는 자와 하도급을 받으려는 자에게 불법 하도급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³⁾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더라도 하도급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하도급을 받으려는 자로 인한 불법 하도급이 근절되지 못하는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하도급 하려는 자에 대한 불법 하도급 근절 의지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음, 안 제29조의2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수급인이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도급 관리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하수급인이 불법적인 재하도급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급인이 현행법에 따라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불법적 재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급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의무 부여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안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29조제7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82조제1항제3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음 안 제38조는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는 자에게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위반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거나 수급인·하수급인과 이를 공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려는 것으로,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지 못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발주자의 불법 하도급 지시·공모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법하게 건설공사를 수행하려는 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라.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 제도 도입(안 제84조)

[illegible]

개정안은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등에 해당하는 불법 하도급에 가담한 자가 그 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및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면제나 감경을 받은 자가 5년 이내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면제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불법 하도급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 간 공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 고발이나 담합 행위를 한 기업들의 협조가 없이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불법 하도급 자진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감면할 경우 자진신고에 대한 책임·부담 완화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어 불법 하도급 근절 및 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음.

< 리니언시 제도 관련 유사 입법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신고관청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마. 불법하도급 행위 등에 관한 벌칙 강화(안 제95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의2(벌칙)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4의2.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u>
<u><신설></u>	<u>4의3.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급제한이나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하수급인과 수급제한 또는 하도급 제한위반을 공모하여 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u>
<u><신설></u>	<u>4의4. 제38조제4항을 위반한 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4의2. ~ 6. (생략)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4. (생략)	<삭제> 4의2. ~ 6. (현행과 같음) <삭제> 제97조(벌칙)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9조제7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82조제1항제3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의3.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자. 다만, 제95조의2제4호의3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98조(양벌규정) ① (생략)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제2호·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양벌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제97조----- ----- ----- ----- ----- ----- ----- ----- ----- -----.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목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98조의2(과태료)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현행	개정안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7. ~ 15. (생략)	<삭제> 7. ~ 15.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인허가권자로 인한 불법 하도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를 통한 부실 건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금지 및 처벌 대상 등을 확대함으로써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그런데, 안 제95조의2제4호의3에서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하수급인이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급제한이나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하수급인과 수급제한 또는 하도급 제한 위반을 공모하여 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제29조의2제1항4)에서의 수급인의 관리 의무는 제29조제3항5)에 따른 재하도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 제95조의2제4호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수급인이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급제한이나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하수급인과 수급제한 또는 하도급 제한 위반을 공모하여 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29조제3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영의원안, 제2202501호)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건설기술인(건설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고용, 자재 또는 장비의 구입·임대를 직접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관리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수급인으로부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것

문 의 처
02)6788-5591